

임원선거공고

임원선거규약 제1안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선거를 실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2024년 0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2. 선거장소 : 화정 베네치아웨딩부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72번길 58, 영프라자빌딩 9층)
3.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인원수
가. 이사(상근이사를 포함) : 6인 ~ 10인 이하
나. 감사 : 3인 이하
4. 선거사유
가. 2024년 2월 1일 이사의 임기 만료
나. 2024년 2월 4일 감사의 임기 만료
5. 선거권자 : 이사장 김재진, 대의원 강여형 외 107명
6. 피선거권자 : 당금고의 회원 중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 정관 제39조제1항, 임원선거규약 제14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자
7.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
가. 열람기간 :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22일 (09:00 ~ 17:00)
나. 열람방법 : 열람신청서 제출 후 열람
다. 열람자격 : 선거권자(이사장 및 대의원)
8.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4년 1월 15일 ~ 2024년 1월 17일 (09:00 ~ 17:00)
나. 등록접수장소 : 고양누리새마을금고 본점 2층 영업지원팀
다. 등록신청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이력서 1부
4)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 1부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1부
6)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에 의한 후보등록시)
7) 최종학력증명서(이력서 및 선거공보에 학력을 기재한 경우에 한함)
8) 회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이사장 발행)
9) 연체채무유무 확인서(이사장 발행)
10)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원 접수증(해당자에 한함)
11) 비영업사실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2) 금고거래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이사장 발행)
13) 기탁금 납부 입금증
14) 기타
9. 기탁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
가. 기탁금액 : 일금오백만원(₩5,000,000) (이사 및 감사)
나. 납부방법 : 고양누리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지정계좌로 입금
다. 기탁금 반환 : 임원선거규약(제1안) 제18조의3(기탁금등)에 의거 선거일후 30일 이내 본인 신청계좌에 입금
10. 후보자 기호 추첨 :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11. 기타
임원선거 참석 시 본인 실명확인증표 및 도장을 필히 지참하시어 회의시작 15분전까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참석 불가)

2024년 1월 12일



MG새마을금고 고양누리 이사장 김재진



임원선거규약(제1안) 기탁금에 관한 사항

제18조의3(기탁금 등)

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사 및 감사 선거 : 500만원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은 금고에 귀속한다. 이 경우 기탁금 반환은 1차 투표 결과에 따른다.

3. 1선거인 1기표 방법으로 이사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가. 당선자, 사망자 및 낙선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낙선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1선거인 1기표 방법으로 감사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가. 당선자, 사망자 및 낙선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낙선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탁금 납부는 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고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명의로 계좌입금하고 금고가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금고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⑤ 기탁금의 반환 또는 귀속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위탁선거의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관할위원회”로 본다.